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11.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 02 - 750 - 21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삭제 <2009.8.18>

제2조 삭제 <2009.8.18>

제3조 삭제 <2009.8.18>

제4조 삭제 <2009.8.18>

제5조 삭제 <2009.8.18>

제6조 삭제 <2009.8.18>

제7조 삭제 <2009.8.18>

제8조 삭제 <2009.8.18>

제9조 삭제 <2009.8.18>

제10조 삭제 <2009.8.18>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1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변경 신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제12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따라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ㆍ외 규격 등 기술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ㆍ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ㆍ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자료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전기통신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면 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자료의 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계획
   가.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및 규격
   나. 구축지역 및 구간
   다. 구축시기
   라. 기술적 조건 등
2. 공동구축이 가능한 전기통신설비ㆍ지역 및 구간
3. 효율적인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방안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제15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지역 및 구간, 구축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희망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방안

③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 법 제20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사용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용(예정)일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개시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개시일) 21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변경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18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1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0조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31>

제21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확하게 적어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3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ㆍ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 (증표)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관리규정) 법 제26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 및 점검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설비 장애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 (관로확보 대상시설) 법 제30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택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발하는 유통단지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6.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거

제27조 (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ㆍ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요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제28조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31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그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 (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력 및 조직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수준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제31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매수)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매각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ㆍ수거)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4장 분쟁의 재정(裁定) 등

제33조 (재정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재정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협정서의 사본
4.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34조 (재정기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재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재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기간을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번 만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재정서)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관한 강의나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9조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0조 (분과위원회) 심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 (수당)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통신재난관리

제43조 (주요기간통신사업자)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1. 시내전화역무
2. 시외전화역무
3. 국제전화역무
4. 초고속인터넷역무
5.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역무

제44조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45조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에게 각자가 운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가 운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여 이의 정보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이나 직권으로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에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4조의5제3항에 따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소방방재청장, 국방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4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비상기획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46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주요기간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단체 소속 직원 중 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제48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50조 (통신재난의 보고) 법 제44조의7 및 법 제44조의8제4항에 따라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통신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및 복구상황과 대책 등을 수시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법 제44조의8에 따른 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통신재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대책본부는 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긴급복구 물자동원 및 복구활동의 지휘ㆍ통제
2. 긴급복구체계의 정립 및 주요기간통신사업자 간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긴급복구 활동을 위한 대책의 수립
3. 통신재난지역의 통신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주요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 (의견진술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면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53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보고ㆍ검사)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ㆍ검사ㆍ취소ㆍ업무정지 및 감독
3. 법 제34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의 해지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나 제품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ㆍ시험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6.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시험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7. 법 제45조의2에 따른 청문
8. 법 제53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ㆍ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7.3>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의 수리와 이에 관한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 등의 취급명령 또는 그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5.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ㆍ수리명령 등
6.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
8. 법 제27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10.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만 해당한다)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3.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연금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55조 (과태료)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21835호,2009.11.2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